

간접강제신청

신 청 인(채권자) ○○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●●●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(채무자) 1. ♦ ♦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◈◈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���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신 청 취 지

- 1.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위임하는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별지목록 기재 기술정보기록을 제출하여 그 기록을 폐기하게 하라.
- 2. 피신청인들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3년의 기간범위 내에서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○○○원씩을 신청 인에게 지급하라.
- 3.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

- 1. 신청인(채권자)은 피신청인(채무자)들에 대하여 귀원 20〇〇가합〇〇〇호 기술정보사용금지 등 청구사건에 있어서 20〇〇. 〇. 〇. 신청인 승소의 판결 선고가 있었고 그 뒤 피신청인들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결국 피신청인들이 패소되어 20〇〇. 〇〇. 〇. 상고기각의 판결선고로 확정되고 또한 위판결은 모두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.
- 2. 위 판결은 "①채무자들은 ○○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○년 동안 별지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피신청인들은 위 기술정보를 위 기간동안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기술정보기록 1권을 폐기하라. ④위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"는 내용의 신청인 승소판결이 었습니다.
- 3. 그런데 피신청인들은 위 판결내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으므로,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위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1개월에 ○○○원의 손해를 입고 있는 중이므로 위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	집행력 있는 판결정본	1통
1.	판결송달증명원	1통
1.	손해액계산서	1통
1.	통고서	1통
1.	신청서부본	1통
1.	송달료납부서	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신청인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제출법원	제1심 법원 MMM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, 피신청인 수만큼의 부본 제출 ※별지의 손해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.		
불복절차 및 기간	· 허·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) 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		
비용	・인지액 : 2,000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기 타	·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 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함.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, 채무자가 그 기 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 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음.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261조)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